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-60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4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2. 위 치 : 서구 경서동 755-4, -5, -6번지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정					변경(안)				
	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획지		비고	가구번호	가구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49	3,399.4	8	355.7	공동개발(권장)	49	3,399.4	8	355.7	공동개발(해제)
			9	124.5				10	423.5	합병
			10	299.0						

※ 서구 경서동 755-4, -5번지 획지합병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 사유
49	8, 9, 10 → 8, 10	공동개발 해제 및 획지합병	- 공동개발(권장) 해제 - 규모있는 건축(신축)을 위한 획지 합병

김민성/서구|도시관리국|도시개발과/2016-04-19 11:38:26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김민성/서구|도시관리국|도시개발과/2016-04-19 11:38:26